



산업별 퇴직연금 도입 실태 및 과제

류건식 선임연구위원

정부의 단계적 퇴직연금 의무화 조치가 시행되어도 퇴직연금 미도입 중소기업의 약 34%는 도입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도입에 소극적임. 통계청의 산업별 도입 실태 결과, 산업 간에 퇴직연금 도입률의 격차가 매우 크고 숙박음식업, 부동산임대업 등 영세사업장의 퇴직연금 도입은 저조한데 주목하여 산업별 퇴직연금 도입 장애요인을 반영한 추가대책이 필요함. 따라서 퇴직연금 의무화 조치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산업별로 퇴직연금 미도입 원인이 무엇인지 사전조사해 원인별 세부대책이 체계적으로 마련되고 연금재원 소실을 우려하여 과거 근로기간의 적립금에 대해서도 퇴직연금으로 전환을 의무화하는 방안 검토가 요구됨

■ 정부는 2022년을 목표로 기업의 퇴직연금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획일적인 의무화 조치로 실효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정부는 퇴직금제도를 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하기 위해 2022년까지 기업의 퇴직연금 도입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함¹⁾
 - 주요내용은 제도전환 이후 적립금부터 퇴직연금 도입을 의무화하고 주어진 기간 내 도입하지 않는 기업에 대해서는 1천만 원의 벌칙을 부과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 의무화 조치에도 퇴직연금 미도입 중소기업의 약 34%는 퇴직연금을 도입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도입에 소극적임²⁾

■ 이러한 의무화조치 실효성 문제는 산업별 퇴직연금 도입 수준과 퇴직연금 도입의 장애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의무화를 추진한 데에 기인함

1) 한정에 국회의원 등이 발의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고용노동부는 9월 정기국회에서 법안의 국회통과를 목표로 추진함

2) 중소기업을 가입하지 않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16년 미래에셋 은퇴연구소가 설문조사한 결과임

- 근퇴법 개정안은 확일적으로 기업규모별(종업원 300인 이상 기업, 종업원 300인~100인 기업, 100인 이하 기업순)로 의무화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산업별 특성은 고려되지 않음

■ 산업별 퇴직연금 도입 실태 결과(2016년),³⁾ 금융보험업의 도입률⁴⁾은 60.0% 인데 반해, 숙박음식업은 6.2%, 부동산 임대업은 11.3%에 불과해 산업간 도입률의 격차가 크게 나타남

- 전체 산업(18개 산업) 중 도입률이 30% 이상 해당하는 산업은 광업 등 7개 산업에 불과하고 대부분의 산업(11개 산업)이 3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건설업(20.5%), 운수업(20.6%), 숙박음식업(6.2%), 부동산임대업(11.3%), 예술여가서비스업(17.9%) 등은 평균(26.9%)이하의 도입률을 보임(<표 1>참조)

〈표 1〉 산업별 사업장 퇴직연금 도입률 실태

도입률(%)	해당 산업
45~60	금융보험업(60.0%)
30~45	광업(41.7%), 제조업(37.6%), 하수처리환경복원업(39.7%), 운수업(30.2%), 교육서비스업(31.9%),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42.6%)
15~30	전기가스수도업(28.1%), 건설업(20.5%), 도소매업(20.6%), 출판영상서비스업(28.1%), 전문과학기술업(29.7%), 사업지원서비스업(27.6%), 공공행정(27.8%), 예술여가서비스업(17.9%)
0~ 15	농림어업(12.8%), 숙박음식업(6.2%), 부동산임대업(11.3%)

자료: 통계청 퇴직연금 통계(2017) 등에 기초 작성

- 또한 퇴직연금 도입률이 낮은 산업이 사업장 규모(종업원수)도 적은 것으로 나타나 퇴직연금 도입 장애요인을 고려한 도입률 제고가 더욱 요구되는 상황임(<표 2>참조)
 - 특히 종업원 수 10인 미만인 농림어업, 숙박음식업, 부동산임대업은 가장 낮은 퇴직연금 도입률을 보이고 있기 때문임

〈표 2〉 사업장 규모별 해당 산업 분류 현황

사업장 규모	해당 산업
100인 이상	전기가스수도업(162명), 금융보험업(237명)
50~99인	사업지원서비스업(52명)
30~49인	출판영상서비스업(35명)
10~29인	광업(26명), 제조업(22명), 하수처리환경복원업(14명), 건설업(11명), 운수업(25명), 전문과학기술업(13명), 공공행정(24명), 교육서비스업(10명), 예술여가서비스업(22명)
10인 미만	농림어업(8명), 도소매업(9명), 부동산임대업(9명), 숙박음식업(9명),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9명)

자료: 통계청 퇴직연금 통계(2017) 등에 기초 작성

3) 2017년 12월 통계청이 발표한 퇴직연금 통계(2016년)를 기초로 조사·분석함

4) 퇴직연금 도입률은 도입사업장/도입대상 사업장 × 100임

■ 이처럼 산업별 퇴직연금 도입률 차이가 매우 큰 점에 주목할 때, 중소기업 중심의 산업별 퇴직연금 도입 장애요인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됨

- 동일한 기업규모(예: 중소기업)에 속하더라도 산업별로 퇴직연금 도입 장애요인이 달라져 도입률의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임
 - 퇴직연금 미가입 중소기업 대상 조사결과, 자금 부담(27.5%), 근로자의 부정적 인식(20.2%), 경영진 무관심(20.0%), 퇴직연금제도 지식 부족(13.9%), 도입절차 및 운용 역량 미흡(8.0%)이 주된 장애요인으로 나타남⁵⁾

■ 따라서 퇴직연금 의무화조치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산업별로 퇴직연금 미도입 원인이 무엇인지 사전 조사해 원인별 세부 대책이 체계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임

- 자금 부담이 주된 미도입 원인인지, 아니면 제도 인식 부족이 미도입 원인인지 등을 산업별로 사전에 조사하여 대책 마련이 필요함
- 중소기업 중 퇴직연금의 도입실적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산업에 대해서는 정부지원의 차별화 대책이 강구되어 할 것임
- 연금재원 소실을 우려하여 과거 근로기간의 적립금에 대해서도 퇴직연금으로 전환을 의무화하는 방안 검토가 요구됨 [kiri](#)

5) 2016년 미래에셋은퇴연구소가 기업을 산업별로 구분하지 않고 단순히 퇴직연금 미가입 중소기업대상(N=300명)으로 퇴직연금도입 장애요인을 조사결과임